

노르딕諸國의 商標制度(I)

—스웨덴 篇—

李 鍾 浣
〈辨理士〉

① 制度의 概要

스웨덴의 現商標法은 1884年 7月 5日에 公布되어 그 後 數次에 걸쳐 改正된바 있으며 先願主義를 採用하면서 周知商標에 關해서 保護해 주는 規定을 두고 있다.

또한 特許廳의 通知에 의하여 商標權者는 後願의 類似商標出願에 대하여 異議申請의 機會를 賦與하는등 이른바 獨逸法系의 商標法을 採用하고 있다.

이 以外에 스웨덴商標制度에 關한 要點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原則으로는 最先의 出願者가 登錄을 享有하도록 되어 있으나 周知商標에 關해서는 例外가 있다.

(2) 審査主義를 採用하고 出願公告制度는 없다. 다만 商標가 등록되었을때는 政府의 登錄公報에 公告되는 외에 日刊新聞에도 登錄公告를 한다.

(3) 異議申請에 關해서는 明文規定이 없으나 特許廳은 審査中에 類似商標를 發見했을때는 先願의 商標權者에 그 要旨를 通知하여 商標權者에게 當該出願에 대하여 異議申請의 機會를 주는 것이 慣行으로 되어 있다.

(4) 拒絕査定通知를 받은 出願人은 國王에 대하여 當該査定日로부터 60日 以內에 訴願을 提起하여 救濟를

請求할 수가 있다.

(5) 商品類別은 없고 商標登錄出願人은 1出願에 대하여 任意의 商品을 指定할 수가 있다. 따라서 聯合商標制度는 없다.

(6) 商標權의 存續期間은 登錄日로부터 10年이며 更新登錄을 하여 延長할 수가 있다.

(7) 商標權侵害罪는 商標權者의 告訴에 의하여 侵害者를 處罰한다.

(8) 商標不使用에 의한 商標登錄의 取消制度는 없다.

(9) 商標權者의 營業이 讓渡되었을때에는 商標權도 原則적으로 여기에 附隨하여 移轉되나 當事者의 合意에 의하여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을 留保할 수도 있고 또한 種類가 다른 指定商品에 關해서는 當該商標權을 分割移轉할 수가 있다.

(10) 團體標章의 規定을 設定하고 있다.

(11) 스웨덴의 鐵鋼製品메이커는 1884年 11月 28日에 公布된 “스웨덴鐵鋼製品의 刻印에 關한 勅令”에 따른 商標法에 基礎하여 登錄된 製造標를 그 製品에 捺印할 것을 義務化하여 違反者를 處罰하고 있다.

이때문에 스웨덴商標法第14條는 商標法과 上述의 勅令과의 關係를 규정하고 또한 製造標의 등록에 關해서는 一般의 商標와 달리 更新登錄出願에 不拘하고 更新하는 特典이 定해져 있다.

(12) 外國登錄商標에 關해서 國王은 相互主義의 原則에 의하여 別途로 定하는 權限을 賦與하고 있으며 스웨덴商標法 第16條第3項第1號의 이른바 테르겔商標(telle kelle marks) 및 第2號의 優先權主張規定에 關해서는 스웨덴이 加盟하고 있는 파리協約第6條 및 第4條의 各各 相當規定이 있어 加盟國이나 相互協定國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스웨덴國王의 別途로 定한 것에 不拘하고 當事國民에 適用된다.

그러나 第16條 3項(後願의 理由로서 拒否된 外國出願者에 대한 救濟規定) 및 同條第4項(登錄되지 않은 圖形, 文字 등의 商標에의 使用에 關해서 外國人商標權者에 의한 禁止特權을 賦與하는 規定)에 關해서는 파리協約에 相當規定이 없어 外國人에게는 適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3) 外國人에게는 相互主義의 原則에 의하여 權利의 享有를 認定하고 있으며 스웨덴에 出願된 商標가 外國人의 本國에 登錄되어 있어야 하고 代理人을 選任해야 하며 스웨덴에서 指定商品의 範圍 또는 存續期間은 本國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廣範圍하거나 長期이던은 아니된다는 條件이 課해져 있다.

(14) 出願(更新出願도 包含)에 있어서는 出願料以外에 登錄料, 公告料로서 50크라운을 同時에 納入할 필요가 있고 更新出願의 納入期間도 75크라운의 出願料

를 納入하면 3個月以內의 延長이 可能하다.

② 制度의 運用 및 節次

가. 出願 및 異議

商標登錄出願을 希望하는 者는 特許廳에 願書를 提出하거나 通信料를 先納한 書面(puepald letter)에 의 해 送付해야 한다.

願書에는 商標를 明確히 記載하고 出願人의 姓名 商號, 職業 및 住所도 詳細하게 記載하여야 한다. 商品의 種類에 關해서 登錄出願을 하려면 그 種類를 詳細하게 記載해야 한다.

願書에는 다음에 揭記한 것을 添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세로 10cm, 가로 15cm를 넘지않는 商標의 見本을 原紙에 印刷한 紙 3通

(2) 前記의 見本과 同一한 寸수의 木版으로 商標의 인쇄에 적합한 紙 2個

(3) 出願料 50크라운

(4) 출원을 拒絕한것을 返還한다는 條件의 登錄料 및 公告料 50크라운

出願이 拒絕되는 경우, 출원인은 特許廳으로부터 出願節次上의 理由를 明記한 出願拒絕査定通知를 받는다.

이와같은 拒絕査定에 대해서 출원인은 査定日로부터 60日이되는 午前 12時까지에 國王에게 訴願할 수가 있다.

한편 商標登錄을 받기되면 商標登錄原簿에 등록되고 登錄通知는 遲滯없이 日刊新聞紙 및 政府登錄公報에 揭載된다.

나. 不登錄商標

다음에 揭記한 경우, 商標登錄을 받을수가 없다.

(1) 圖形, 文字, 또는 言語로서 造形的인 標章을 構成하는 것.

다만 願書에 記載된 商品의 特定한 類別을 明確하게 指示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1내지 數語로된 표장으로서 商標의 原產地, 品質, 名稱, 數量 또는 價格을 表示할 意圖가 없는 것은 登錄에서 拒絕되지 않는다.

(2) 他人의 姓名, 名稱 또는 他人의 不動產名稱을 不當하게 包含시킨 것.

(3) 國家의 紋章, 國旗, 記章, 商標登錄出願에 관계되는 商品 또는 類似한 商品에 關한 印章.

(4) 前記 紋章 등과 容易하게 混同을 이르기 쉬운 것.

(5) 公序良俗을 害할 憂慮가 있는 것.

(6) 他人의 既登錄商標나 他人의 先願商標와 同一하거나 극히 類似하여 誤認混同을 이르기 念慮가 있는 것.

(7) 國內에서 他人의 使用事實이 이미 確立되고 있는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것 등이다.

다. 存續期間 및 更新登錄

商標權의 存續期間은 登錄日로부터 10年이며 그 존속기간은 10年마다 更新할수가 있다. 따라서 登錄의 更新이 없으면 保護의 効力은 商標期間의 滿了와 더불어 消滅된다.

更新登錄의 경우 出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願書를 提出하거나 郵送하되 商標의 見本 1個를 添付하고 出願料로서 50크라운과 更新登錄 및 公告料로서 50크라운을 納入해야 한다.

갱신등록출원이 拒絕되었을때는 갱신등록료 및 公告料는 返還된다.

그러나 갱신등록출원이 商標登錄名義人 以外의 者에 의하여 되었을때는 출원인은 그 商標에 關한 自己의 權限을 證明해야만한다.

갱신등록출원은 存續期間의 滿了前에 해야하나 존속기간만료후 3개월 이내이더라도 75크라운의 出願料를 納入하면 가능하다.

라. 移轉 및 抹消

登錄商標를 사용하는 權利는 商標가 사용되고 있는 國內에서 營業과 함께 하는 경우에 限하여 讓渡할수가 있다.

商標登錄에 關한 權限은 그 商標를 사용하는 營業의 讓渡에 限해서만 讓渡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만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讓渡人이 그 商標를 保有하거나 또는 雙方의 當事者가 다른 種類의 商品에 붙은 그 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갖게되는 경우는 여기에 限하지 않는다.

마. 侵害 및 賠償

다음에 揭記한 行爲를 한 者는 20크라운 以上 2,000크라운 以下의 罰金, 또는 重大한 損害를 준 경우 1個月 以上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고 損害를 모두 賠償하게 한다.

(1) 他人의 登錄商標임을 알고서 그 他人의 姓名, 商號, 不動產名稱 또는 商標를 販賣하거나 他의 去來目的에 供하는 商標, 그 容器, 包裝에 去來上 不正하게 使用하는 者.

(2) 自己의 商品을 表示하기 위하여 他人의 商標를 프라카드, 포스타, 其他 類似한 使用 또는 廣告, 팜프렛, 定價表 등에 사용하는 者.

(3) 前記의 不正한 表示를 붙인 商品인줄 알면서 그 商標를 輸入, 販賣를 위해 表示 또는 供給하는 者.

한편 團體標章에 關해서는 그 登錄名義人인 團體만이 侵害行爲에 對하여 刑事 및 民事의 訴를 提起할 수가 있다.